제20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2014.10.24)

조례 및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류현복]

--- 목 차 ---

의 안 번 호	건 명	페이지
2014 ~ 74	거창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1
2014 ~ 75	거창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부르미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2014 ~ 76	거창군 학급급식지원센터 식자재 조달대행 수탁기관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13
2014 ~ 77	서북부경남 거점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21

<의안번호 제2014 - 74호>

거창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제출일자: 2014. 10. 16.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위원회 회부일자: 2014. 10. 16.

2. 제안이유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8항제2호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평가하는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규정하여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대행업체의 역량을 강화하여 청소행정서비스 수준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평가원칙을 정함(안 제4조)

나. 평가대상 및 방법, 횟수를 정함(안 제5조)

○ 대상: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 및 소속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 등

○ 방법/횟수: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 서류평가/ 연 1회 이상

다. 평가지침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라. 평가 실시에 관하여 정함(안 제7조)

○ 평가지침에 기초한 평가계획을 세워 매년 하반기에 평가를 실시

○ 평가업무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폐기물관리법」제58조의2에 따른 한국폐기물협회에 평가 대행 가능

마. 현장평가단 구성(안 제9조)

○ 지역주민, 민간단체 회원 등으로 5명 이상 구성

바.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안 제11조·제12조)

○ 평가결과 시정이 필요하면 대행업체에 시정을 명할 수 있음

○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상황을 현장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

○ 이행이 부진한 경우 보완조치 및 필요한 조치 가능

사. 세부기준(안 제14조)

○ 평가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환경부가 정한 기준(「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을 따르도록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

○ 환경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 ('13. 9)

나. 예산조치 : 2014년도 6백만원 예산확보

다. 합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그 밖에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14. 8. 28. ~ 9. 16.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4) 성별영향분석: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2호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평가하는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규정하여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대행업체의 역량을 강화하여 청소행정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6. 참고자료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2호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07.8.3., 2010.7.23., 2013.7.16.>

②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0.7.23., 2013.7.16.>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 중 폐지, 고철,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용기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0.7.23., 2013.7.16.>

④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수집한 생활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신설 2013.7.16.>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중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자(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제25조제5항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폐기물처리 신고자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⑤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0.7.23., 2012.6.1., 2013.7.16.>

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 는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 산정에 필요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⑦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유통·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7.23., 2013.7.16.>

⑧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0.7.23., 2013.7.16., 2014.1.21.>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실적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내용을 계약일부터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5. 제4호에 따른 대행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대행비용 지출내역을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뇌물 등 비리혐의로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7.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뇌물 등 비리혐의로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⑨ 환경부장관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대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의 자료 제출 및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0.7.23., 2013.7.16., 2014.1.21.>

<의안번호 제2014 - 75호>

거창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부르미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제출일자: 2014. 10. 16.

나. 제 출 자: (표주숙의원대표발의)(김종두·최광열·강철우·이홍의 의원발의)

다. 위원회 회부일자: 2014. 10. 16.

2. 제안이유

○ 거창군내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단위 거주 어르신들의 교통 이동권 불편을 해소하고

○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버스운행 확대방안에 대비 예산절감 기대 및 최상의 교통서비스 제공으로 농어촌 어르신들을 삶의 질 향상을 위함

3. 주요내용

○ “부르미택시”, “부르미택시 운행대상마을” 용어 정의 (안 제2조)

-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일반택시를 말한다.
-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을 말한다.

○ 부르미택시 운행방법을 규정 (안 제3조)

○ 부르미택시 비용의 신청 및 지원결정 규정 (안 제4조, 제5조)

- 해당마을 ~ 읍소재지: 1인당 농어촌버스요금 부담
- 해당마을 ~ 면소재지: 1대당 100원 부담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

나. 예산조치 : 2015년도 12백만원 예산확보 계획

다. 합의 : 안전총괄과 (교통담당)

라. 그 밖에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14. 10. 15. ~ 10. 20.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4) 성별영향분석: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단위 거주 어르신들의 교통 이용권 불편을 해소하고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버스운행 확대 방안과 비교할 때 예산절감 기대 및 최상의 교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로서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6. 참고자료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제2호가목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소류지(小溜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

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소요비용 추계서

1. 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거창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부르미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 제5조

2. 농어촌버스 미운행 마을 주민 부르미택시 탑승비용 지원

가. 사업기간 : 2015년 ~ 계속

나. 주요 사업내용 :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부르미택시 탑승비용 지원

다. 탑승비용 지원

○ 총사업비 : 120백만원(군비100%)

- 2015년도 사업비 : 120백만원

○ 연차별 예산 지원계획

구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이후	비고
계	480	120	120	120	120	
국비						
지방비	580	120	120	120	120	군비100%
자부담						

3. 비용소요 내역(연간)

구분	사업내용	소요비용 (백만원)	산출근거	비고
계		120		
301-11 기타 보상금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부르미택시 운행에 따른 탑승비용 지원	120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부르미택시 이용주민 지원 - 120,000천원×1식=120백만원	

4. 작성자 : 안전총괄과장 최종승

<의안번호 제2014 - 76호>

거창군 학교급식지원센터 식자재 조달계획 수탁기관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제출일자: 2014. 10. 16.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위원회 회부일자: 2014. 10. 16.

2. 제안이유

○ 「거창군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물류 · 유통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우수한 품질의 안전한 식자재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켜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거창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와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식자재 조달대행 사업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연 왕

○ 시 설 명: 거창군 학교급식지원센터

○ 위 치: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347-12번지

○ 규 모: 연면적 1,345㎡ (지상2층)

- 1층(1,054㎡): 입하장, 냉장·냉동 창고, 소포장실, 출하장 등
- 2층(291㎡): 사무실, 회의실, 식당, 탈의실 등

나. 위탁사무

○ 시　　설: 학교급식지원센터 1, 2층 건물 및 장비 유지관리

○ 운　　영: 38개교(10,000명) 식재료 조달대행 업무

다. 그간의 추진사항

○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도 지원사업 선정: 2010. 1

○ 거창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1. 10. 4

○ 학교급식지원센터 준공: 2011. 11. 2

○ 학교급식지원센터 위탁동의(안) 가결: 2012. 4

○ 학교급식지원센터 식자재 조달대행 수탁기관선정: 2012. 4 (거창원협)

○ 23개교(4,025명) 식자재 조달대행(초등): 2012. 5 ~ 2012. 8

○ 36개교 식자재 조달대행(중・고등 추가): 2012. 9 ~ 2013. 2

○ 38개교(10,000명) 식자재 조달대행(유치원 추가): 2013. 1~

라. 운영계획

○ 재 위탁 운영

- 수탁기관: 거창사과원예농업협동조합 (대표 윤수현)
- 위탁기간: 2015년 01월 01일 ~ 2015년 12월 31일까지
  ※ 단 2016년 이후 수탁업체는 2015년 상반기 공모로 선정

○ 위탁운영 방식

- 공급품목의 가격, 생산 공급업체 선정, 이익금의 분배조건 등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협약서 작성 및 공증)
- 학교급식 식자재 조달대행 및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 등 실무 일체 위탁

마. 소요예산

○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학교급식법」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 「거창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나. 양우계획

○ 식자재 조달대행 수탁기관과 협약 체결: 2014년 11월

○ 위탁운영 시설장비 점검: 2014년 12월

○ 위탁 운영 실시: 2015. 01. 01 ~ 2015. 12. 31.

다. 위탁운영계획 : 따로 붙임

5. 검토의견

❍ 「거창군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물류 · 유통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우수한 품질의 안전한 식자재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민간위탁으로서

❍ 거창사과원예농업협동조합에 위탁이 2014년 만료됨에 따라 2015년 1년 동안 재위탁 하려는 사안으로, 재위탁 사유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6. 참고자료

❍ 거창군 학교급식지원센터 식자재 조달대행 민간위탁 운영계획

❍ 학교급식법 제3조, 제9조, 제10조 및 거창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3조, 및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거창군 학교급식지원센터 식자재 조달대행 위탁운영 계획

❍ 기 수탁기관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식자재 조달대행 기간이 2012. 04. 16 ~ 2014. 12. 31.까지로 종료됨에 따라 ❍ 2014. 09. 30.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1년 재위탁으로 결정되어 기 수탁기관(거창사과원예농업협동조합)에 재위탁 운영계획입니다

Ⅰ. 법적근거

▢「학교급식법」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거창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Ⅱ. 시설개요

▢ 위　　치: 거창읍 대평리 1347-12번지

▢ 건축규모: 지상2층 **(건축면적 : 1,119㎡ / 연면적 : 1,345㎡)**

▢ 공간구성

시설내역	면적(㎡)	내　　용	비 고
입 · 출하장	246	급식 식재료의 입하와 출하되는 공간	
저장시설 3동	267	예냉창고, 저온창고, 냉동창고 각 1동	
위 생 실	56	소분소포장 인원 및 내방 출입 인원에 대한 소독, 청결 구간	
부 대 시 설	776	사무실, 주방 및 운영기계장비 등	
계	1,345		

Ⅲ. 위탁추진 계획

▢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 일　　시: 2014. 9. 30(화)14:00~

○ 심의결과: 재위탁(1년간)

- 수탁업체: 거창사과원예농업협동조합(윤수현)
- 수탁업무: 식자재 조달대행 등 학교급식센터 시설 및 장비 운영
- 수탁기간: 2015. 1. 1 ~ 2015. 12. 31(1년간)

※ 단 2016년 이후 수탁업체는 2015년 상반기 공모로 선정

▢ 위탁범위

○ 시　　설: 학교급식지원센터 1, 2층 건물, 장비 유지관리

○ 운　　영: 관내 38개 전 학교 식자재 조달대행 업무

▢ 선정기준

○ 학교급식에 대한 식자재 조달대행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업체.

○ 관내 농산물 사용량 확대 역량을 갖춘 전문성 있는 비영리법인.

▢ 향후 추진일정

○ 협약체결: 2014. 11

○ 시설 및 장비점검: 2014. 12

○ 위탁운영: 2015. 01. 01.~ 12. 31.

Ⅳ. 소요예산

▢ 해당없음

Ⅴ. 기대효과

▢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안정화로 원활한 식자재 조달대행업무 추진

▢ 맞춤형 마을기업 생산 농산물 공급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관 계 법 령(요약)

□ 「학교급식법」

[시행 2013.11.23.] [법률 제11771호, 2013.5.22.,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
교육부(학생건강안전과), 044-203-6546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개정 2007.10.17., 2010.7.23.>

1.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2.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제10조(식재료) ① 학교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그 밖에 식재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거창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농업기술센터)(시행일 : 2011.10.04)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학교급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지원대상 선정과 지원방법 및 지원규모 결정
3. 급식재료 생산자 및 생산단체와의 협약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학교급식법」 제5조 제4항에 따라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우수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급식지원센터는 학교급식의 공공성과 공익적 기능을 추구하는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배농가·생산자단체와의 재배계약 체결에 따른 생산계획 조정 및 품목 선정
2. 유통 및 공급 관리, 물품 등록, 전산 수주 및 발주 관리
3. 거창교육지원청 및 관련 유관 기관·단체 등과 연계한 교육·체험·건강평가 및 홍보
4. 위원회, 거창교육지원청, 지원대상 시설의 급식소위원회간 급식업무 협의
5.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할 경우 필요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부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전처리, 포장 등 1차 가공시설
2. 친환경농산물 가공공장
3. 물류창고 및 차량기지
4. 생산단지 조성과 학교급식 체험프로그램을 위한 종합교육시설
5. 우수 식재료 생산 또는 학교급식 지원 컨설팅을 위한 연구소

④ 군수는 필요시 급식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사회적기업 등의 민간 기구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⑤ 급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1. 급식지원센터 운영의 총괄과 대외협력업무 추진을 위한 급식지원센터장
2. 교육·홍보, 생산·물류·유통, 전산재무 등 관리요원

⑥ 급식지원센터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정) 1999.07.15 조례 제1515호
(일부개정) 2008.01.14 조례 제1878호
(일부개정) 2013.06.12 조례 제2138호
(일부개정) 2014.05.28 조례 제2192호

관리책임부서 : 행정과
연락처: 055-940-3170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및 후단신설 2013.6.12)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6.12)

<의안번호 제2014 - 77호>

서북부경남 거점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제출일자: 2014. 10. 16.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위원회 회부일자: 2014. 10. 16.

2. 제안이유

○ 「서북부경남 거점산지유통센터」의 물류·유통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법인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

○ 근거: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3. 주요내용

가. 연 왕

○ 시 설 명: 서북부경남 거점산지유통센터

○ 위 치: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72번지

○ 규 모

○ 부 지: 36,376㎡

○ 연 면 적 ┌ 당초: 8,219㎡(선별 3,499㎡, 저장 1,780㎡(1,440톤) / 기타 2,940㎡)
└ 보완: 2,874㎡(저장 1,467㎡, 선별 1,171㎡, 기타 236㎡)

○ 시설내역: 선별기(1일 50톤 / 연간 10,000톤 처리) / '13년도 6,366톤

나. 위탁사무

○ 시설: 유통센터 토지·건물·기계·물류기기 유지관리

○ 운영: 농산물 수집·출하·판매기능 등

다. 운영계획

○ 재위탁 운영

- 수탁기관: (주)NH유통 (대표 신인재)
- 위탁기간: 2015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까지(4년)

○ 위탁운영 방법

- 시설물 관리, 농산물 수집·출하·판매기능 등 통합운영
- 거창군·함양군·합천군에서 생산된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우선 취급
-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상품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출하자에게 산지유통 구조 개선을 위한 조치 이행
- 농산물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장비와 인력 확보, 기술 및 재정지원을 통한 원물의 고급화 노력 이행

라. 소요예산

○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15조 제2항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나. 양후계획

○ 운영주체 선정 군의회 동의 : 2014년 10월

○ 거점APC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 : 2014년 11월

○ 위탁 운영 실시: 2015. 1. 1 ~ 2018. 12. 31.

다. 위탁운영계획 : 따로 붙임

5. 검토의견

○ ㈜NH유통에서 지난 5년(2009년~2014년)간 위탁 운영한 서북부경남 거점APC의 위탁기간의 만료됨에 따라, 2014. 10. 17일 유통센터운영위원회를 개최 재위탁으로 심의된 사안으로 지금까지 제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NH에 재위탁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6. 참고자료

○ 서북부경남 거점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부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제5조, 제15조

서북부경남 거점산지유통센터 위탁운영 계획

○ (주)NH유통에서 지난 5년(‘09~’ 14년)간 위탁 운영한 서북부경남 거점APC의 위탁 기간이 만료(’ 14. 12. 31)됨에 따라
○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주)NH유통에서 재위탁 운영하고자 함.

Ⅰ. 법적근거

○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5조제2항
-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주체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기간 만료 2개월 전에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다.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Ⅱ. 시설개요

□ 거점APC 건립 연혁

○ 2005. 5. 19 : 서북부경남 거점APC 대상자 선정 (농림축산식품부)
○ 2007. 3. : 조합공동법인 ⇒ 농업회사법인으로 운영주체 변경
○ 2007. 5. 30 : 농업회사법인 (주)NH유통 설립 / 대표공모 이찬일
○ 2008. 9. 9 ~ 2009. 10. 25 : 서북부경남 거점APC 건립
○ 2009. 5. 1 : (주)NH유통 운영주체 변경 / 대표 신의재
○ 2012. 9. : 서북부경남 거점APC 시설보완사업 준공

□ 시설현황

○ 위 치 : 거창・거함대로 3372 / 거창・함양・합천군
○ 사 업 비 ┌ 당초 : 19,303백만원(기금 7,750, 도비 3,100, 거창 7,012, 함양 1,240, 합천 201)
└ 보완 : 3,279백만원(국 10, 기금 1,560, 도 624, 군 1,085)
○ 부 지 : 36,376㎡

○ 연 면 적 ┌ 당초 : 8,219㎡(선별 3,499㎡, 저장 1,780㎡(1,440톤) / 기타 2,940㎡)
└ 보완 : 2,874㎡(저장 1,467㎡, 선별 1,171㎡, 기타 236㎡)
○ 시설내역 : 선별기 (1일 50톤 / 연간 10,000톤 처리) / ‘13년도 6,366톤

❑ 운영현황

○ 위탁기간 : 2009. 11. 17 ~ 2014. 12. 31 (5년, 1개월간) / 무료

○ 운영주체 : 농업회사법인 (주)NH유통/ 대표이사 신인재

- 주관농협 : 거창사과원예농업협동조합 / 조합장 윤수현

- 참여농협 : 14개소 / 거창7, 함양2, 합천5

○ 자 본 금 : 2,000백만원 / 거창원협 51% - 주관농협

Ⅲ. 위탁추진 계획

□ 위탁선정

○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 심의의결('14.10.17.)
: 4년간 재위탁 결정

○ 위탁기관 : (주)NH유통

○ 위탁기간 결정 : 2015. 1. 1 ~ 2018. 12. 31

※ 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 14명 (위원장1, 부위원장 1, 위원 12)

- 위원장 : 거창군 부군수

- 위 원 : 13명 이내
(공무원6, 군의원1, 생산농가2, 함양·합천군수3, 전문가1)

□ 위탁범위

○ 시설 : 산지유통센터 토지·건물·기계·물류기기 유지관리

○ 운영 : 농산물 수집·출하·판매기능 등

Ⅳ. 향후계획

○ 운영주체 선정 군의회 동의 : 2014년 10월

○ 거점APC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 : 2014년 11월

○ 위탁운영 실시 : 2015. 1. 1 ~ 2018. 12. 31.

Ⅴ. 소요예산 : 해당없음

Ⅵ. 기대효과

○ 유통센터의 물류·유통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다 체계적인 운영체제 구축

관 계 법 령(요약)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제정) 1999.07.15 조례 제1515호
(일부개정) 2008.01.14 조례 제1878호
(일부개정) 2013.06.12 조례 제2138호
(일부개정) 2014.05.28 조례 제2192호

관리책임부서 : 행정과
연락처: 055-940-3170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및 후단신설 2013.6.12)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6.12)

□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기능) 유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 및 그 가공식품의 집하・선별・포장・저장・판매
2. 농산물의 세척・절단・살균・포장 등 신선편이 상품의 생산 및 판매
3. 전국 대형 유통업체와 도・소매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판매
4. 농산물의 판매 확충을 위한 홍보 및 시장정보 수집
5. 그 밖에 유통센터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설치운영)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에 따라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유통센터 시설보완 및 현대화 사업
2. 농산물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시설 지원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운영위탁) ① 군수는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2. 제1호의 생산자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3. 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유통업체
4. 제1호의 생산자단체, 제2호의 법인 및 전문유통업체 등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5. 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제1호 및 제3호의 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유통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주체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 만료 2개월 전에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다.

③ 유통센터의 위탁에 따른 제반사항 결정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17조(운영주체 선정) ① 군수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위탁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농산물의 수집·판매능력, 투자계획, 자금조달계획, 경영계획, 인력확보 및 농산물유통에 대한 경험 등을 기준으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운영주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운영주체를 선정하려는 때에는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거창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8조(위탁협약 및 지정) ① 군수는 운영주체가 선정되면 운영주체와 협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정서 교부 시 필요한 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23조(운영방법) ① 운영주체는 시설물 관리, 농산물 수집·출하·판매기능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는 거창군·함양군·합천군에서 생산된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우선취급하여야 한다.

③ 운영주체는 농산물의 표준화·기계화·규격화·공동출하 등을 통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상품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출하자에게 산지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운영주체는 유통센터에서 취급하는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 우수농산물품질인증제 등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생산자단체 및 출하농가에 대한 기술 및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원물의 고급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운영주체의 의무 및 책임) ① 운영주체는 유통센터의 토지, 건물, 기계, 물류기기 등 위탁받은 재산을 유지·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② 운영주체는 유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통상적 시설·설비의 설치, 부수장비의 유지, 개·보수, 제세공과금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주체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 시설물 및 장비의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화로 인한 교체, 대수선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운영주체는 유통센터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손해보험 또는 공제계약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운영주체는 유통센터를 관리·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